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480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
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
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임종득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19
4.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1

I. 개요

1.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48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1.

(3) 회 부 일 : 2026. 4.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

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임종득·윤준병·박대출의원안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 ○ 대상 -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 과세특례 - 양도소득세액 100% 감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대상 - 적용기한 연장 (임종득의원안) 2028년 12월 31일 (윤준병의원안) 2031년 12월 31일 (박대출의원안) 2029년 12월 31일 ○ 과세특례 - (현행과 동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박대출의원안 2026. 5. 22. 발의(의안번호 19053)

- ☐ 현행법¹⁾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3년 이상” 자경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각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윤준병의원안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박대출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는 2003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적용 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2023년 정기회에서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로 적용 기한이 연장된 바 있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전망)
금액	12,435	16,323	20,459	16,482	10,664	9,033	6,563	7,150

* 동 수치는 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하는 경우를 합산한 금액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참고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 개요]

- 목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대상: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등
- 지급요건: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전까지 소유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64세 이하 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시** 지급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첫째,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고령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은퇴와 농지 유동화를 촉진하여 세대 간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종료할 경우, 고령 농업인은 농지 매도를 통한 경영이양보다는 농지 상속 또는 비효율적인 영농 지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을 통한 영농 규모화 촉진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년	974(100.0%)	5(0.5%)	27(2.8%)	125(12.9%)	322(33.1%)	495(50.8%)
증 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둘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는 성실 경작을 장려하여 농지 보전을 유도²⁾하고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 10년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 감면액을 농업인의 소득으로 환원하는 등 조세특례를 유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농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B)
	농가소득(A)	비율(A/B)	
2015년	37,215	70.6%	52,683
2016년	37,197	69.5%	53,493
2017년	38,239	71.4%	53,577
2018년	42,066	73.5%	57,195
2019년	41,182	70.3%	58,545
2020년	45,029	72.8%	61,839
2021년	47,759	74.9%	63,771
2022년	46,153	69.7%	66,243
2023년	50,828	72.2%	70,389
2024년	50,597	69.9%	72,357

주: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및 비농업소득을 합한 농가의 총소득을 말함. 2019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동(洞)지역의 가구원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2)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3건의 개정안은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을 각각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데(2028년 12월 31일(임동득의원안, 2년), 2029년 12월 31일(박대출의원안, 3년), 2031년 12월 31일(윤준병의원안, 5년)),
-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문 의 처
02)6788-5150

3)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윤준병의원안)

현행	개정안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 제89조의3) 대상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등 대상소득: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의 이자·배당소득 한도 - 출자금: 1명당 2,000만원 - 예탁금: 1명당 3,000만원 특례내용 및 적용기한 -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소득 요건 충족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대상자: (현행과 같음) 대상소득: (현행과 같음) 한도 - 출자금: (현행과 같음) - 예탁금: (현행과 같음) 특례내용 및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28.12.31. 까지</th><th>'29.1.1.~ '29.12.31.</th><th>'30.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그 밖의 가입자	출자일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30.12.31. 까지</th><th>'31.1.1.~ '31.12.31.</th><th>'32.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그 밖의 가입자	출자일 가입일	'30.12.31. 까지	'31.1.1.~ '31.12.31.	'3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30.12.31. 까지	'31.1.1.~ '31.12.31.	'3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25.12.31. 까지</th><th>'26.1.1.~ '26.12.31.</th><th>'27.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출자일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table><tr><th>출자일 가입일</th><th>'30.12.31. 까지</th><th>'31.1.1.~ '31.12.31.</th><th>'32.1.1. 부터</th></tr><tr><td>감면 내용</td><td>비과세</td><td>5% 분리과세</td><td>9% 분리과세</td></tr></table>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출자일 가입일	'30.12.31. 까지	'31.1.1.~ '31.12.31.	'3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출자일 가입일	'30.12.31. 까지	'31.1.1.~ '31.12.31.	'32.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⁴⁾에 대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배당소득등”)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⁵⁾으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기준 및 단계적 과세전환 체계를 도입함.

현재 조합원 및 소득 요건 충족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⁶⁾에 대하여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5) 재정경제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6)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대한 배당소득 및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한편, 그 밖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예탁금 가입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하여는 5%로 분리과세 중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 또는 예탁금 가입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하여는 9%로 분리과세 예정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구분	적용기간	특례내용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① 농·어·임업인 조합원 또는 ② 소득 요건 충족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2028. 12. 31	비과세
		2029. 1. 1. ~ 2029. 12. 31	5% 분리과세
		2030. 1. 1. ~	9% 분리과세
	그 밖의 가입자	~ 2025. 12. 31	비과세
		2026. 1. 1. ~ 2026. 12. 31	5% 분리과세
		2027. 1. 1. ~	9% 분리과세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연혁을 살펴보면,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적용기한이 3회 연장되었다가 2001년에 영구 비과세로 전환되었음. 이후 2007년에 일몰이 재도입되어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5년 등 7차례 연장되었음.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 ②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

한편,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1976년 신설되었으며, 1995년 일몰이 도입된 이후 1996년, 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20년, 2022년, 2025년 등 12차례 연장되었음.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 200만원으로 도입되어, 1987년 500만원, 1992년 1,000만원, 2024년 2,000만원까지 증액되었고, 예탁금 비과세 한도는 1976년부터 100만원으로 도입되어, 이후 1978년 500만원, 1987년 1,000만원, 1991년 2,000만원, 2009년 3,000만원까지 증액되었음.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주요 연혁]

시 기	내 용
1976년~1977년	· 예탁금 100만원, 출자금 200만원 비과세 신설 시행
1978년~1986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100만원 → 500만원
1987년~1988년	·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 한도 인상 및 이용고배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 예탁금 : 500만원 → 1,000만원 - 출자금 : 200만원 → 500만원
1989년 이후	· 준조합원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
1992년~1994년	· 비과세 한도 인상 : - 예탁금 : 1,000만원 → 2,000만원 - 출자금 : 500만원 → 1,000만원
2009년~2012년	· 예탁금 비과세 한도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2024년 이후	· 출자금 1천만원 → 2천만원으로 납입한도 증액
2025년 이후	· 소득 요건 신설 : - 조합원 및 소득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만 비과세, 그 외의 가입자는 5% 분리과세

자료: 재정경제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한편, 납입한도 상향 등으로 조합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조세지출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1조 359억원을 기록하였음.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출자금	증감률
'20년	12,692,288	6.37	593,049	5.12	311,860	13.98	5,920,854	13.13	8,366,135	12.1
'21년	13,618,962	7.30	637,003	7.41	360,607	15.63	6,561,631	10.82	9,599,412	14.7
'22년	14,220,952	4.40	673,672	5.76	397,170	10.14	6,770,079	3.18	9,837,449	2.50
'23년	14,503,038	2.00	708,519	5.17	432,643	8.93	6,463,591	△4.53	9,248,811	△6.00
'24년	15,167,014	4.60	729,962	3.03	470,086	8.65	6,621,311	2.44	9,832,390	6.30
'25년	15,666,925	3.30	739,339	1.28	494,860	5.27	6,747,953	1.91	9,202,146	△6.41

주: 연말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년	53,491,025	△5.4	6,204,701	△7.2	1,737,220	2.3	28,964,829	△1.4	46,848,210	△2.1
'21년	49,639,937	△7.2	6,351,680	2.4	1,773,703	2.1	29,139,459	0.6	47,899,564	2.2
'22년	57,413,110	15.7	7,976,482	25.6	2,135,860	20.4	33,409,369	14.6	57,672,907	20.4
'23년	62,112,233	8.2	8,254,928	3.5	2,353,041	10.2	34,174,623	2.3	57,865,172	0.3
'24년	63,110,017	1.6	8,200,585	△0.7	2,418,508	2.78	33,960,955	△0.6	56,394,950	△2.5
'25년	61,044,877	△3.3	7,519,872	△8.3	2,380,003	△1.6	32,321,792	△4.83	51,061,731	△9.46

주: 연말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연도별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3,760	3,724	7,094	10,359	10,680	11,48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배당소득등 비과세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첫째, 상호금융기관은 농어촌·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농어업인과 지역 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농어민 및 지역 주민의 저축을 지원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수신 기반과 지역 금융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농어업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바, 비과세 특례가 축소되는 경우 예탁금 이탈⁷⁾에 따른 수신 기반 약화로 농어업인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농어가 연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⁸⁾이며, 상호금융기관은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도 수행⁹⁾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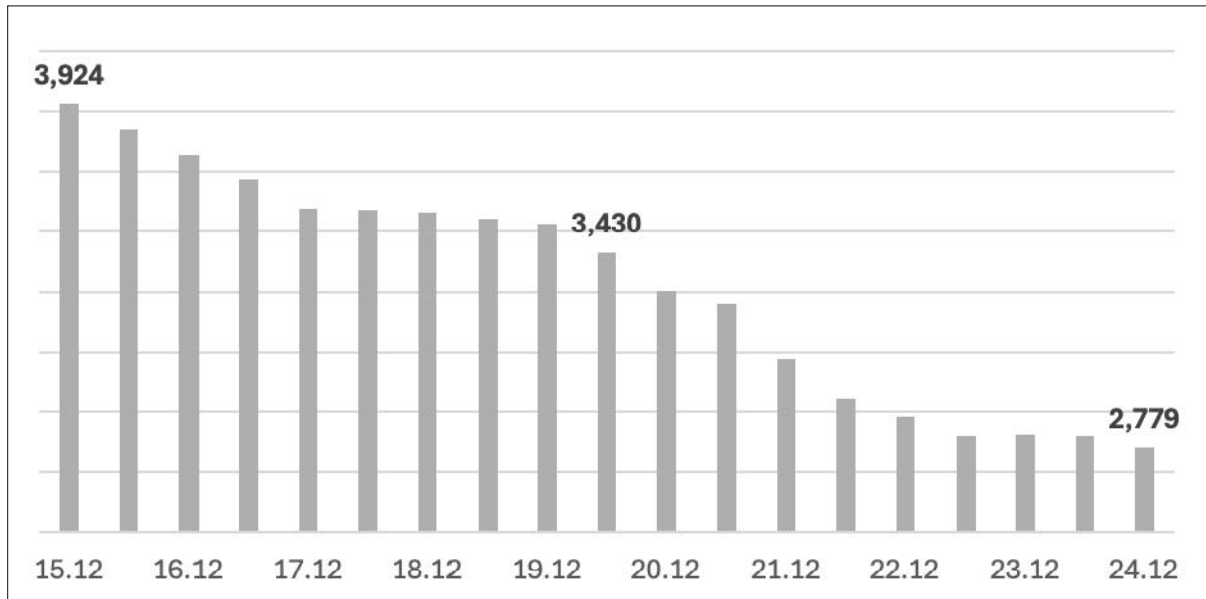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 2025.11.7.

8) 2024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60만원,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6,365만원인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8,038만원으로 조사(통계청,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9) 디지털 전환 확산과 함께 제1금융권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상호금융은 오히려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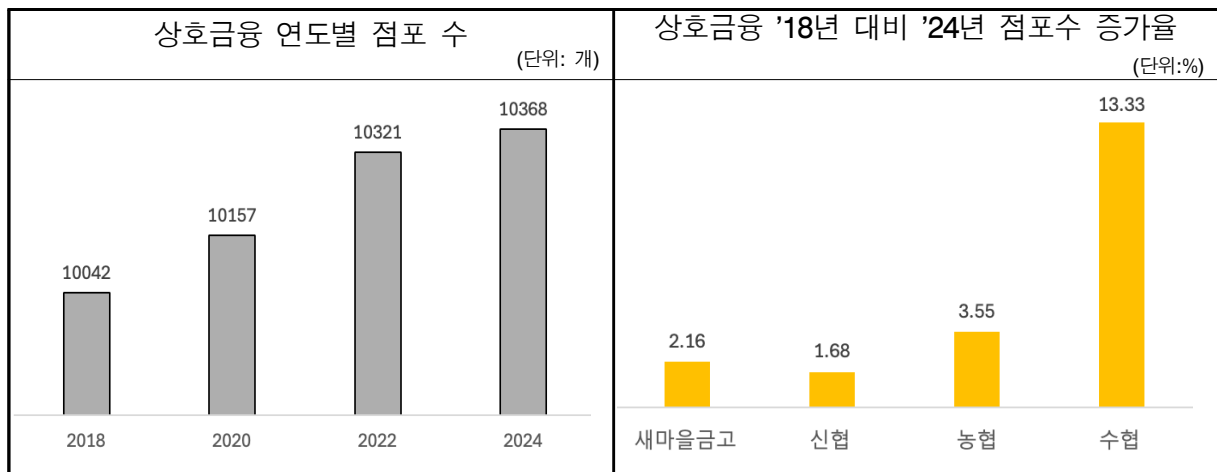
[제1금융권 4대 은행 점포 수 합계 추이]



주: 제1금융권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합계를 의미함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호금융 점포수 현황]



주: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상호금융 고려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호금융의 수신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둘째, 상호금융기관의 공익적 기능과 제1금융권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업 여건을 고려할 때, 상호금융기관의 수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상호금융기관은 신탁, 퇴직연금, ISA 등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이 제한¹⁰⁾되는 등 제1금융권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에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우량 조합원 등의 자금이 이탈하여 상호금융기관의 재무구조와 영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추가적인 자금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다만, 개정안은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지원 체계를 다시 5년 연장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현행법 개정 당시 정책적 판단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농·어·임업인 조합원 및 일정 소

10) 상호금융(단위조합 기준) 취급상품 제한

구 분	근거법률	제한 사유
신탁, 퇴직연금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조특법, 자본시장법	유사 신탁업자(은행, 증권회사 등)만 취급 허용
양도성예금증서	한국은행법, 금융위규정	한은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미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은행법, 금융위 결정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만 가능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인·허가 사항
국공채 창구판매	국채법, 기재부규정	은행, 증권회사만 취급 허용
외국환	외국환거래법	환전 등 일부업무 제한적 취급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법	신용카드업자에 미포함
주택신용보증서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 미체결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은행법에 의한 제1금융권만 취급 허용

자료: 농협중앙회

득 이하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하는 한편, 그 밖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지역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준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지역거주자가 시중은행의 예·적금처럼 비교적 용이하게 조합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임.

[상호금융기관 가입 요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회원	지역 농업인	지역 어업인	지역 임업인	지역거주자 등	지역거주자 등
준조합원	지역거주자 등	제한 없음	지역거주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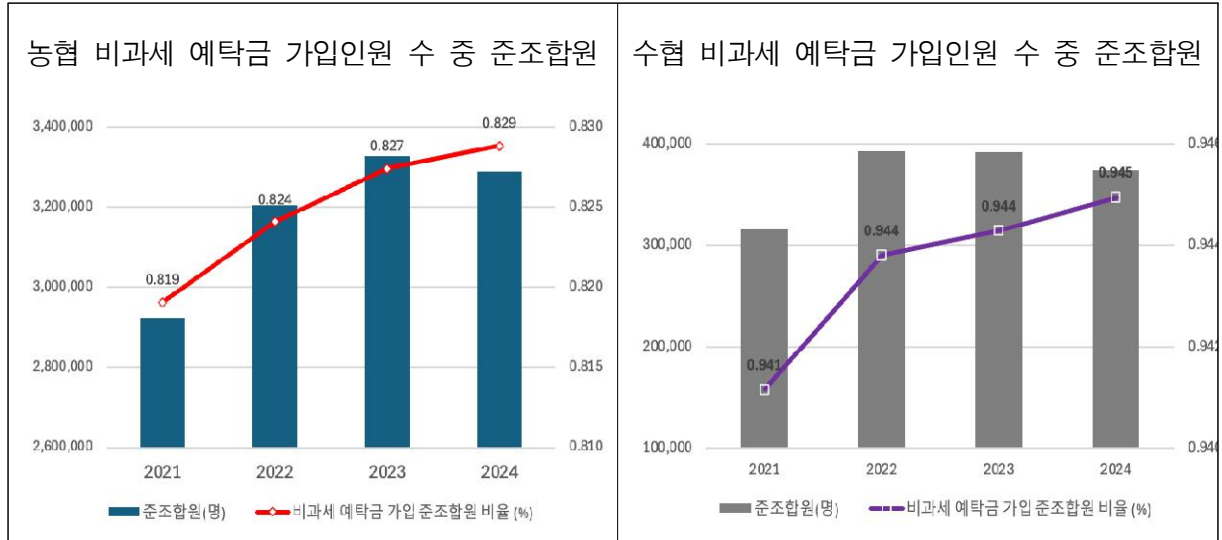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조합 활동과 무관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직장형 새마을금고 등을 중심으로 고소득자가 고배당·고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상당수가 일반 금융소비자 또는 준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났다¹¹⁾.

11) 조합원/준조합원 별 비과세 대상 예탁금 현황('24년말 기준, 출처 : 각 기관)

- 농협 : 조합원(11.6조원, 18.4%), 준조합원(51.4조원, 81.6%)
- 수협 : 조합원(1.0조원, 5.0%), 준조합원(19.0조원, 95.0%)

[농협 및 수협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수 중 준조합원 비율]



출처: 농협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내부자료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서는 ① 수혜 자격에 일정한 소득요건을 도입하거나 조합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실질적 필요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 혹은 ② 일몰계획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현행법은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단계적 과세전환 체계를 마련한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제도 개편이 시행된 이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당시의 입법 취지와 정책적 판단을 변경할 충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상호금융기관의 수신기반 유지 및 농어촌 금융지원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단계적 과세전환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서, 조세지출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0

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적용기한 연장

(임종득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66조)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 특례 ① 법인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6\text{억원} \times \text{조합원 수} \times \text{소득률}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 12)$ 한도 내 면제 - 그 외: $(1,200\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 12)$ 한도 내 면제 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그 외: 1,200만원 이하 면제 * 나머지 5% 세율로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농지, 초지,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임종득의원안)</u> <u>2031. 12. 31.(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u>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67조)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 ○ 특례 ① 법인세 -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3천만원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 그 외: (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1,200만원 이하 면제 * 나머지 5% 세율로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u>2026. 12. 31.</u>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68조)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 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 ○ 특례 ① 법인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50억원 × 소득률 × 사업연도 월수/12) 한도 내 면제 - 그 외: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②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 나머지 분리과세 ③ 양도소득세 - 농지, 초지,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 특례: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1. 12. 31.(윤준병의원안)</u>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특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u>2026. 12. 31.</u>	○ 적용기한: <u>2028. 12. 31.(임종득의원안)</u> <u>2031. 12. 31.(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u> ○ 시행일: 2027. 1. 1.(임종득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신성범의원안 2026. 4. 21. 발의(의안번호 1848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²⁾에 따라 농어업의 경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협업적 또는 기업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임.

이는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도로서, 2023년 말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10,132개, 영어조합법인은 719개, 농업회사법인은 16,387개가 운영되고 있음.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현황]

(단위: 개)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영농조합법인	10,568	11,016	11,137	10,163	10,230	10,136	11,337	10,001	10,132
영어조합법인	361	398	443	480	513	529	542	682	719
농업회사법인	7,209	9,097	10,721	11,617	13,085	14,363	14,268	16,103	16,3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은 지향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운영방식에는 일부 차이가 있음.

영농·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인 5인 이상의 발기가 필요하며 비농·어업인은 출자는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제한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설립 가능하고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총출자액 80억원 초과 시 8억원 제외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으며 의결권 제한도 없음.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목적	협업적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수행
설립요건	농어업인 5인 이상 발기인 필요	농업인 1인 이상이 설립 가능
출 자	비농어업인은 준조합원으로서 출자 가능(의결권 없음)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까지(총출자액 80억원 초과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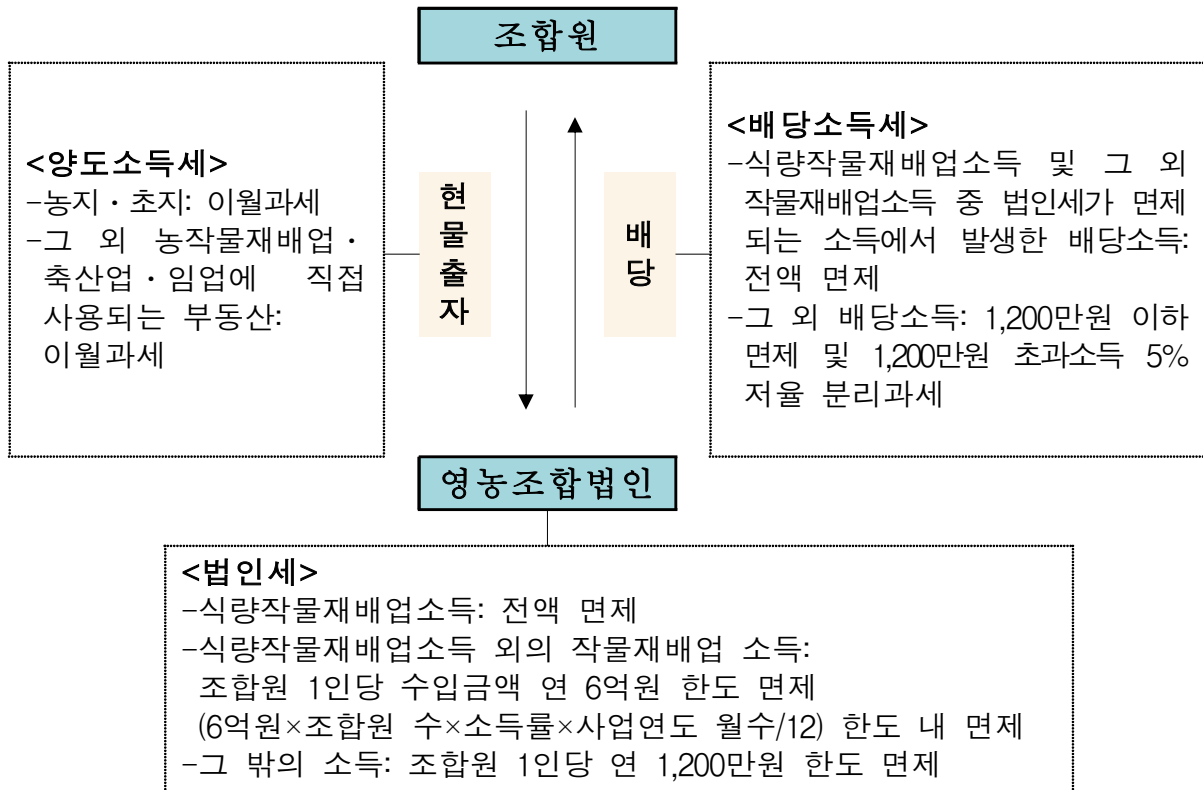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과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제도 및 조세특례 도입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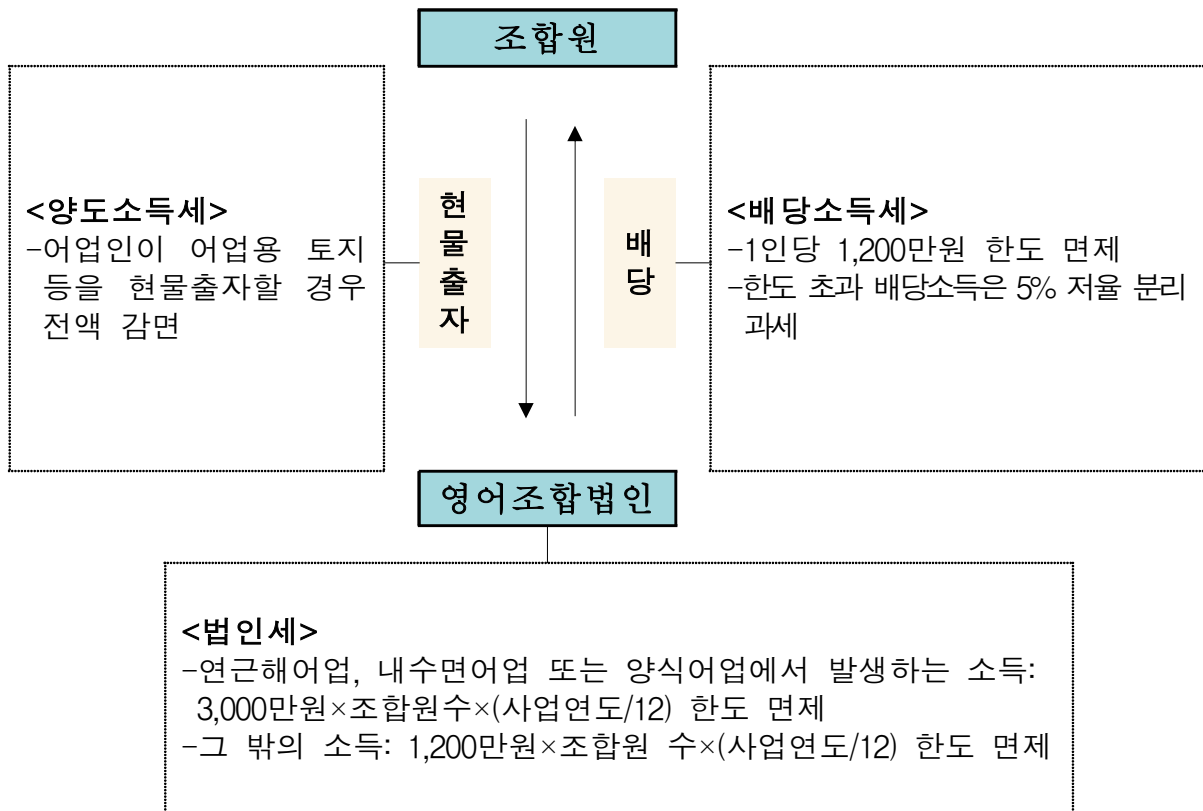
구 분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제도 도입	1990. 4. 7.	1996. 12. 31.	1995. 6. 23.
제도 법적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조세특례 도입	1990. 1. 1.	1998. 1. 1.	1996. 1. 1.
조세특례 법적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조세특례 내용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간 일부 차이는 있으나, ① (양도소득세)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초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허용하고, ② (법인세) 법인소득의 원천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며, ③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의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분리과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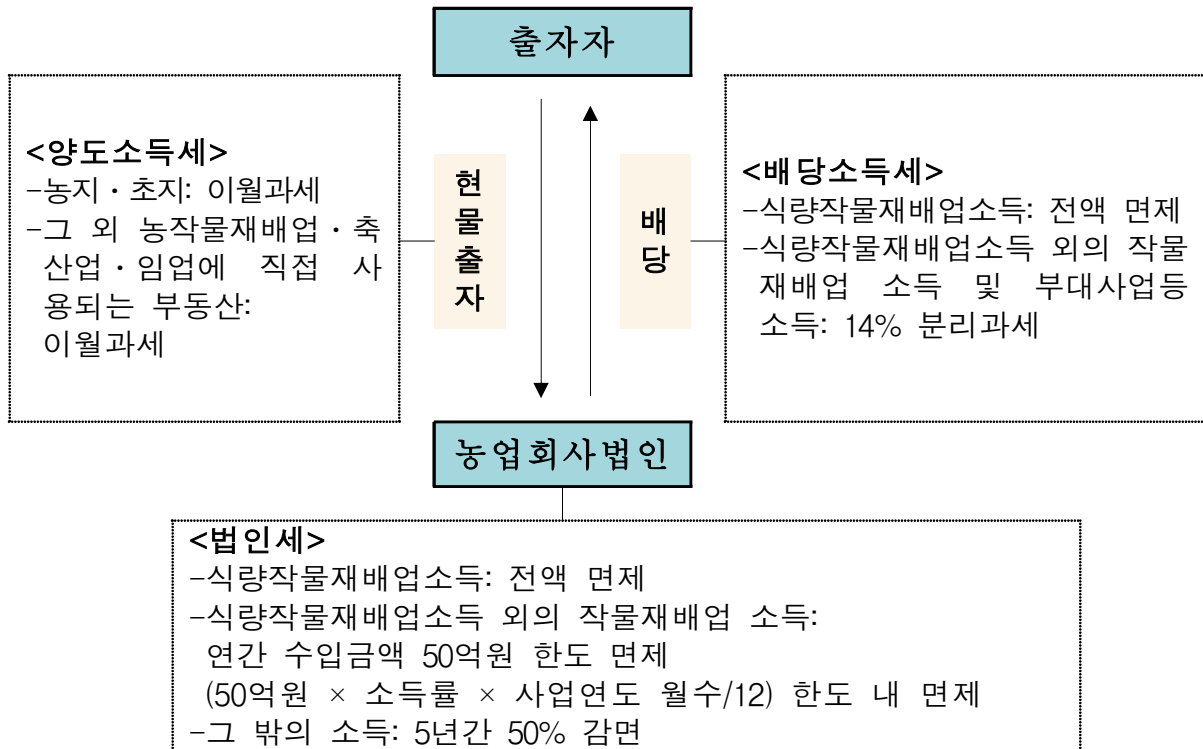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위 3개 조세특례는 1998년 전부개정 당시 일몰이 설정되어 2003년까지를 적용기한으로 하였으나, 이후 9차례에 걸쳐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284	277	328	343	387	379	342	350	384	399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25	29	33	31	29	36	36	39	51	5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154	253	227	177	193	278	240	224	234	240
합계	463	559	588	551	609	693	618	613	669	691

주: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4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영농조합법인	2,241	16,079	15	333
영어조합법인	509	3,919	1	0
농업회사법인	687	9,700	10	4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감면 실적]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영농조합법인	16	350	0	0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0	0	0	0

주: 국세청은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실적을 합하여 공개하고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개정안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운영을 지원하여 협업적·기업적 농·어업 경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업 인력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은 51.3%이고 어가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은 48.2%로 각각 5년 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20.3%) 대비 고령화 비율이 높은 상황임.

[연령 계층별 농가 인구와 전체인구 비교]

(단위: 천명, 세, %)

	2020	구성비	202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인구	구성비
합 계	2,314	100.0	2,507	100.0	193	8.3	51,685	100.0
0~14세	100	4.3	72	2.9	-29	-28.4	5,258	10.2
15~64세	1,234	53.3	1,149	45.8	-85	-6.9	35,912	69.5
65세 이상	980	42.3	1,286	51.3	306	31.2	10,514	20.3
중위 연령	62.4		65.3		2.9		46.7	
고령인구 비중	42.3		51.3		9.0		20.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2026. 4.

[연령 계층별 어가 인구와 전체인구 비교]

(단위: 천명, 세, %)

	2020	구성비	2025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인구	구성비
합 계	97	100.0	95	100.0	-2.4	-2.5	51,685	100.0
0~14세	6	5.7	4	4.1	-1.7	-30.5	5,258	10.2
15~64세	57	58.2	45	47.7	-11.4	-20.1	35,912	69.5
65세 이상	35	36.0	46	48.2	10.7	30.6	10,514	20.3
중위 연령	60.8		64.5		3.7		46.7	
고령인구 비중	36.0		48.2		12.1		20.3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2026. 4.

또한, 농·어업용 토지 등의 현물출자 유도를 통한 법인의 규모화 및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음.

둘째, 도시와 농·어촌간 소득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위 법인의 주요 구성원인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최근 10년간 농·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낮은 편이고, 특히 농가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최근 10년간 농·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70.6%	43,895	83.3%	52,683
2016년	37,197	69.5%	47,077	88.0%	53,493
2017년	38,239	71.4%	49,016	91.5%	53,577
2018년	42,066	73.5%	51,836	90.6%	57,195
2019년	41,182	70.3%	48,415	82.7%	58,545
2020년	45,029	72.8%	53,187	86.0%	61,839
2021년	47,759	74.9%	52,392	82.2%	63,771
2022년	46,153	69.7%	52,911	79.9%	66,243
2023년	50,828	72.2%	54,779	77.8%	70,389
2024년	50,597	69.9%	63,652	88.0%	72,357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함.
2019년부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동(洞)지역의 가구원 1인 이상 일반가구(농림어가 포함) 중
가구주 직업이 임금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 한편, 임종득의원안은 영농조합법인 등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신성범 의원안은 위 2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윤준병의원안은 이에 더해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까지 총 3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

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4.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제121조의23제10항) ○ 면제대상 -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자회사 포함)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8년 12월 31일</u> (임종득의원안) - <u>2029년 12월 31일</u> (박성훈의원안) - <u>2031년 12월 31일</u> (김성원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임종득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70), 박성훈의원안 2026. 3. 10. 발의(의안번호 17352), 김성원의원안 2026. 3. 17. 발의(의안번호 17534), 신성범의원안 2026. 4. 21. 발의(의안번호 18480), 윤준병의원안 2026. 4. 30. 발의(의안번호 18730)

☐ 위 5건의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여 농협중앙회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임종득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로 2년, 박성훈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로 3년, 김성원의원안, 신성범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은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는 인사, 급여, 교육, 유통 등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전산시스템의 운영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농협정보시스템이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탁한 법인으로부터 시스템 운영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10항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운영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¹³⁾.

□ 동 면세제도는 2012년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5회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2009년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각각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¹⁴⁾을 국회에 제출하였고¹⁵⁾, 이후 해당 내용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농협정보시스템은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 전에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구조개편 전부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 왔음. 따라서 농협정보시스템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020호, 2009. 12. 16. 정부 제출)

15) 정부가 농협의 구조개편을 추진한 것은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자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음.

(대안)」¹⁶⁾에 반영되어 2012년 3월 2일 시행되었음.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농협에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조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그 중 하나였음. 현재의 농협중앙회, 농협은행과 그 외 농협 자회사는 구조개편 전에는 같은 법인(농협중앙회)에 속해 있었으므로 상호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구조개편으로 법인이 분리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 제도는 2011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으로 201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적용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왔음.

[농협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연혁]

개정일	개정 내용
2011. 12. 31. (도입)	중앙회 →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보·손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2013년 12월말)
2014. 1. 1. (1차 개정)	적용기한 4년 연장(∼2017년 12월말)
2016. 12. 20. (2차 개정)	면제대상 전산용역 추가: 농협은행 → 중앙회, 금융지주회사, 농협생보·손보사
2017. 12. 19. (3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19년 12월말)
2019. 12. 31. (4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21년 12월말)
2021. 12. 28. (5차 개정)	적용기한 2년 연장(∼2023년 12월말)
2023. 12. 31. (6차 개정)	적용기한 3년 연장(∼2026년 12월말)

□ 농협 전산용역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농협경제지주·하나로유통·양곡과, 금융지주·은행·생명·손해보험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고 있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811085호, 2011. 3. 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

으며, 공급가액은 2025년 기준 265억 6,100만원임. 한편,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 및 금융지주·생명·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공급가액은 2025년 기준 381억 6,200만원 수준임.

[농협중앙회 공급 전산용역 현황]

수탁기관	위탁기관	위탁 전산시스템	전산용역	공급가액(백 만 원)	
			2023년	2024년	2025년
농협 중앙회	농협경제지주	·관리시스템	16,763	15,543	12,971
	농협하나로유통	·경영정보시스템	1,388	1,309	985
		·경제·유통시스템			
	농협양곡	·인프라, 통신, 정보보호 등 ※ 25년 이후 유통시스템 제외	39	42	41
	NH농협금융지주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	593	829	696
	NH농협은행	·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범농협 통합구매 등	8,920	8,954	9,240
	NH농협생명	·관리시스템	1,198	1,215	1,315
	NH농협손해보험	·범농협 통합구매 등	1,155	1,183	1,313
소 계			30,056	29,075	26,561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인프라 및 보안 운영 ·디지털금융 일부 등	38,767	38,768	35,190
	NH농협금융지주	·관리시스템 일부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1,588	1,999	2,262
	NH농협생명	·관리시스템 일부 ·전산기기수급관리 등	317	359	416
	NH농협손해보험	·관리시스템 일부 ·전산기기수급관리 등	204	254	294
	소 계			40,876	41,380
합 계			70,932	70,455	64,723

주: 전산용역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의미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의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2023년 70억 9,300만원 2024년 70억 4,600만원, 2025년 64억 7,200만원 수준임. 2025년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별 감면규모는 농

협중앙회 35억 1,900만원, 농협은행 9억 2,400만원, 경제지주 12억 9,700만원 등 기타 회사 20억 2,900만원이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면제	농협중앙회 부담분	3,877	3,877	3,519
	농협은행 부담분	892	895	924
	기 타	2,325	2,273	2,029
	계	7,093	7,046	6,472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간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정부가 주도한 농협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농협은 농업인의 이익을 위하여 농민자본으로 구성된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협의 구조개편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개편으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까지 농협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개정 관련 합의사항으로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¹⁷⁾.

둘째, 농협중앙회 등은 회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농업·축산 경제사업, 상호금융사업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협중앙회 등의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임.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농협중앙회의 세부담 증가로 인한 고유목적사업 재원의 감소로 농업인 지원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농협중앙회가 공급받는 전산용역은 대부분 농협조합을 위한 것으로서 동 과세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협조합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2025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산용역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의 부담 구조를 보면, 총 감면세액 35억 1,900만원 중 76%인 26억 6,400만원을 농협조합이 부담하고

17) 당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농협법 개정관련 합의사항’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법 통과 이후 실사를 하여 확정된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사업부문에 우선 배분함.
- 정부는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다른 농업부문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
- 정부는 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수준 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함.

있는바, 동 면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농협조합의 세부담이 26억 6,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2025년 농협중앙회가 농협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산용역 비용 분담 구조]

(단위: 백만원, %)

구 분	농협조합	중앙회	경제지주	합 계
분담금액	26,641	6,971	1,578	35,190
감면세액	2,664	697	158	3,519
비 중	76	20	4	100

자료: 농협중앙회

□ 다만, 동 과세특례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지원적 성격임을 감안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면세는 농협이 분할된 이후 안정화를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업구조 개편 완료 이후에도 동 면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은 2012년부터 실시되어 2017년 경제사업 완전 분리를 통해 최종 완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 당시 적용되었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의 한시적 운영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제도의 관행적 연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산용역의 경우 구조개편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민 지원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 이후 조직 안정화의

임시방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¹⁸⁾

둘째, 타 법인에 대해서는 전산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바,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¹⁹⁾

「부가가치세법」상 법인격이 분리된 주체 간의 용역 공급은 과세 거래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임. 이에 따라 일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명칭사용권(상표권) 및 전산시스템 위탁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및 경제·금융지주회사 간 용역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상 적정하지 않다는 것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3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64억원(연평균 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18)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19) 기획재정부,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8)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23.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일몰기한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2028년말	△83	△88	-	-	-	△170	△85
~2029년말	△83	△88	△93	-	-	△263	△88
~2031년말	△83	△88	△93	△98	△103	△464	△9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다만,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동 제도의 감면기간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는데, 각 개정안은 적용기한을 2년(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장할 경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⁰⁾

문 의 처

02)6788-5147

20)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 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필요시 제도개선 필요사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